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# 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  
(경유)

참 조 사무국장

제 목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「폐기물관리법」 개정(안) 관련 의견수렴  
알림



1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을 입법예고('24.10.16~10.30, 불임 참조) 하였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개요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28일(월)까지 협회로 제출 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□ 개정(안) 개요

- (주요 내용)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

구분	행정처분
현행 [제66조 관련]	▶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<b>입력하지 아니한 경우</b>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
개정(안) [제68조 관련]	▶ (신설)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<b>기간 내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</b>

- (시행일)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## 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 (담당자)	개정안에 대한 의견 (찬성/반대/수정)	사유 (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)

붙임 「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10/23

주임 **염경미** 팀장 **권병문** 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조정환** 회장 **박하준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430 (2024. 10. 23.) 접수

우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(양재동, 일동홀딩스(주)사옥) 3층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[cped2110@koras.org](mailto:cped2110@koras.org) / 공개